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안양천 명소화 · 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10. 22.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00호로 2021년 10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1) 안양천 유역에 위치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2021. 5. 1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에 따라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나. 명칭 및 구성(안 제2조 ~ 5조)

- 1) 명칭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로 칭함
- 2) 서울권역 구로·영등포·양천·금천구청장, 경기권역 광명·안양·군포·의왕시장을 위원으로 구성

- 3) 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장 1인은 정기회 선출이 원칙
- 4)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2년 이내일 경우 자치단체장 임기까지만 회장을 수행

다. 기능(안 제9조)

- 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 협약 체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

라. 운영 및 의결(안 제10조 ~ 제11조)

- 1)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1년마다 1회 개최
임시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
- 2)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마. 경비부담(안 제17조)

- 1) 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 2)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4.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58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 제102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 서울·경기 권역 8개 자치단체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동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2021. 5. 11. 운영규약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안양천 고도화·명소화 행정협의회”의 주 기능은 안양천 국가정원 등록 추진, 중앙정부 등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및 홍보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임.
- 이번에 제출된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에 영등포구가 적극 참여하여 안양천을 국내 최고의 하천 명소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협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정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른 사항으로 관계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이며, 또한 동의안으로 제출된 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 자료

1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

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